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부재

소 관 기 관 환경부

조 치 기 관 환경부

내 용

###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 「하수도 조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울산광역시가 2013. 4. 29. 「하수도법」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폐수<sup>55)</sup>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하수도법」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폐수가 부담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2013. 5. 21. 폐수가 공공하수

---

55)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가 통보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르면 오수의 경우 그 발생량을 공장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수의 경우 발생량이 공장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폐수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수도 조례 기준」 등에 폐수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환경부는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수가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오수<sup>56)</sup>와 달리 「하수도 조례 기준」 등에 폐수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과 여부 및 부담금 산정방식을 확인한 결과, [별표] “지방자치단체별 폐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 현황”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환경부 고시에 폐수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없어서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56) 환경부가 2012.8.17.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

더욱이 폐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오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김해시 등 4개 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량<sup>57)</sup>을 기준으로, 광주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실제 배출량<sup>58)</sup>을 기준으로, 양주시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신고량<sup>59)</sup>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각각 달리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폐수가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부과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수도 조례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수도 조례 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57)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신고 또는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상의 폐수배출량  
5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따라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는 실제 배출 폐수량  
59)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신고량

[별표]

**지방자치단체별 폐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m³, 천 원)

부과 여부 및 유형	구분	배출업소 (유입 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1일 오수발생량 등	
			부과일	오수폐수량	금액		
미부과	광주광역시 서구	♡♡ 주식회사 (제1하수처리장)	-	176.25	-	2017년 폐수배출시설 변경 설치신고량 176.25m³ 미부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하수처리장)	-	625	-	2017년 폐수배출시설 변경 설치신고량 625m³ 미부과	
	용인시	- (기흥하수처리장)	-	15	-	2017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량 15m³ 미부과	
	부천시	- (굴포하수처리장)	-	15	-	2016년 폐수배출시설 변경 설치신고량 15m³ 미부과	
부과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시 신고량	김해시	- (화목하수처리장)	2017. 5. 24.	50.22	81,20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량 50.22m³
		제천시	- (송학하수처리장)	2015. 2. 26.	20	16,720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량 20m³
		오산시	- (오산1하수처리장)	2014. 12. 15. 2015. 1. 28.	30.09 56.51	53,917 101,258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30.09m³+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량 56.51m³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실제 배출량	광주시	- (매산하수처리장)	2016. 2. 4.	2.15 (12.15m³ 중 10m³ 초과분)	7,000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9.6m³ +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상 1개월 평균배출량 2.55m³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량은 9m³임)
	건축허가시 폐수발생 예측량	연천군	- (청산하수처리장)	2014. 11. 28.	40.53	71,821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21.03m³ + 건축허가시 폐수발생 예측량 19.5m³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고량	양주시	- (옥정하수처리장)	2016. 5. 31.	501	1,248,993	배수설비 설치공사시 신고량 501m³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